

06장

원산지 표시제도

1. 원산지 표시제도 이해
2. 원산지 표시제도 목적
3. 원산지 표시 기준
4. 원산지 묻고 답하기

1 원산지 표시제도 이해

1) 농산물품질관리원 역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농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와 농식품안전성조사, 친환경·GAP인증제, 농산물검사,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및 민원 상담전화 1588-8112

2)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과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1) 농산물은 동일작물·동일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

<예>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2)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원산지 표시의 도입배경

국제화 시대에 즈음하여 수입개방화에 따른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태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2 원산지 표시제도 목적

1) 목적

- ①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적절한 원산지를 표시하게하여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알권리를 보장하며,
- ② 공정한 거래를 통한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2) 관련법규

- ① 대외무역법: 수입·수출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
- 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수입 및 국산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사항 규정

3) 원산지의 정의

- ① 일반적으로 농산물이 재배, 생산된 지역
 - 국내에서의 원산지는 지역·지방을 의미
 - 국제거래에서의 원산지는 생산된 국가를 지칭
- 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는 농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
 - 농산물은 동일작물·동일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
 - <예> 이천쌀, 나주배, 청송 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원산지 표시제도의 기능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

- ① 특정지역이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성과와 신용의 차별화에 따라 생산자를 보호
- ②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합리적인 선택기회 제공



5) 원산지의 기원과 연혁

- ① 원산지의 기원
원산지의 어원은 물물교환시대부터 물품의 성과와 함께 가치평가의 척도로 이용, 경제발전, 국제무역 활성화로 국제성을 띄고(고려인삼, 스코틀랜드 위스키, 포르투갈 와인 등) 생산자는 물론 생산국가의 성과 보호차원
- ② 원산지 연혁
 - 국제법: 파리협정(1883년), GATT(1947년), WTO 원산지규정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 제정을 위한 다년간 협상이 계속됨.
 - 국내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정(1993년):국산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도입

6)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 경과

-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정(1993년):국내유통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도입
- ② 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실시('95. 1. 1.)
- ③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시: '08.7.8.
- ④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및 인터넷 공표제: '09.11.9
- 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10.2.4.공표) → 시행 '10.8.11.
- ⑥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97. 12. 13)개정 원산지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7)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발전방향

- ① 국민소득이 증가 할수록 소비자의 알 권리보장을 위한 원산지표시 대상범위 확대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효과로 원산지 표시확대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② 유통 농산물은 수입개방 속도 및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
- ③ 음식점은 소비가 급증하여 소비자와 국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위주로 확대 추진
- ④ 소비자가 구입시 쉽게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 ⑤ 홈쇼핑, 인터넷 등으로 농식품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제도('09.11.9 시행)
- ⑥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시 원산지표시 대상 추가('17.1.1부터 의무규정)
- ⑦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방법의 지속적 보완, 발전

3 원산지 표시 기준

표시대상자

- ①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 ② 생산·가공하여 출하, 판매(통신판매 포함) 하거나
- ③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입니다

원산지 표시 기준

- ①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
*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임

예시) 올바른 표시: 고사리(국산), 고사리(충청북도), 고사리(보은군)
올바르지 않은 표시: 고사리(치악산), 고사리(덕곡리)

- ② 외국산일 경우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 표시('대외무역법'에따름)
* 수입완제품(수입가공품)의 경우도 「대외무역법」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

예시) 팥(중국산), 콩(미국산)

- ③ 상황별 원산지 표시기준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 혼합하는 경우)
 - **국내에서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경우**
 -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 표시

예시) 쌀(이천시40%, 철원군 25%, 파주시 20%, 원주시 15%)을 혼합한 경우
→ 쌀(국산) 또는 쌀(국내산), 쌀(이천시40%, 철원군25%, 파주시20%)

-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 표시

예시) 팥(국산40%, 중국산30%, 미국산20%, 태국산10%)을 혼합한 경우
→ 팥(국산40%, 중국산 30%, 미국산20%)

- **원산지가 다른 외국산만을 혼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 표시

예시) 강낭콩(중국산40%, 미국산30%, 태국산20%, 캐나다산10%)을 혼합한 경우
→ 강낭콩(중국산40%, 미국산30%, 태국산20%)

· 원산지 표시방법

국산 농산물, 수입 및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원칙: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

| 허용: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가능

구분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글자크기	1. 포장 표면적이 3,000cm ²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cm ² 이상~3,000cm ²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cm ²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구분	제작기준	글자크기
풋말	가로8cm x 세로5cm x 높이 5cm 이상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1/2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
안내표시판	진열대	가로7cm x 세로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x 세로10cm 이상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3cm x 세로2cm 이상 또는 직경 2.5cm이상	20포인트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이 있는 경우 사용 불가)	가로14cm x 세로 10cm 이상	

·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기준: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물, 주정, 당류, 당류가공품, 식품첨가물은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에서 제외)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 원료

① 1순위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 1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예시 미국산밀가루 98%, 국산소금 2%를 혼합하여 부침가루를 제조한 경우
→ 부침가루: 밀가루(미국산)

② 1순위, 2순위 원료 합이 98% 이상인 경우

| 1, 2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예시 국산찹쌀가루 76%, 중국산 팔22%, 중국산 참기름 1%, 국산소금 1%을 혼합하여 바람떡을 제조한 경우
→ 바람떡: 찹쌀가루(찹쌀:국산), 팔(중국산)

③ 그 외의 경우

| 1, 2,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

예시 호주산 밀가루 60%, 국산팔20%, 중국산동부 10%, 국산소금5%, 설탕 5%를 혼합하여 팔빵을
제조한 경우
→ 팔빵: 밀가루(호주산), 팔(국산), 동부(중국산)

원료배합비율 순위가 중복되는 경우

① 순위가 중복되는 원료들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

예시1 **A원료 30%, B원료 30%**, C원료 25%, D원료 15%
→ 1순위(**A,B**), 3순위(C) 원료 원산지 표시

예시2 A원료 30%, **B원료 20%, C원료 20%, D원료 20%**, E원료 10%
→ 1순위(A), 2순위(**B,C,D**) 원료 원산지 표시

예시3 A원료 30%, B원료 25%, **C원료 15%, D원료 15%, E원료 15%**
→ 1순위(A), 2순위(B), 3순위(**C,D,E**) 원료 원산지 표시

· 통신판매시 원산지 표시방법

❖ 공통 사항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글자위치·크기·색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

❖ 통신매체별 표시사항

| 전자매체 이용(인터넷, 배달앱, TV 등)

표시위치		표시시기	글자크기	글자색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대상 제품이 화면에 표시 되는 시점부터 표시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허용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위치를 허용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 가능		*별도의 창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 제공에 관한고시」에 따라표시 가능 소비자가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크기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	

|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표시위치		글자크기	글자색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1/2이상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허용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가능	광고면적 기준 8~20포인트 이상 *농산물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준용 가능	

❖ 배달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표시 방법	원칙	농산물, 가공품 등의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
	허용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알아두기

통신판매의 정의와 범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



· 벌칙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기준

- ① 형사처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 ② 과징금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 ③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 ④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처분 기준

구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1차	2차	3차
과태료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미표시	5~1,000만원 이하 *농산물 가공품 제조업자의 경우 20~1,000만원 이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5~1,000만원 이하)		
위반업체 공표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공표(공표 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교육 이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원산지 묻고 답하기

1. 국산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합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

*원주 콩을 판매할 때 원산지 표시방법

O				X
품 명: 콩 원산지: 국산 가 격: 2,500원	품 명: 콩 원산지: 국내산 가 격: 2,500원	품 명: 콩 원산지: 강원도 가 격: 2,500원	품 명: 콩 원산지: 원주시 가 격: 2,500원	품 명: 콩 원산지: 치악산 가 격: 2,500원

2.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 국내가공품의 표시기준은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를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두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내에 국내에서 가공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배합 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

| 사용된 원료 중 혼합비율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 한 가지를 표시

가래떡: 쌀 98%(국산), 식염2% → 가래떡(쌀: 국산)
참기름: 참깨100% → 참기름: (참깨: 중국산)
부침가루: 밀가루 98%, 정제염 2% → 부침가루: 밀가루(밀: 미국산)

| 두 가지 원료의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두 가지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

chapal떡: 국산 chapal 75%, 중국산 팔앙금 23%, 소금을 혼합하여 떡을 제조한 경우
→ chapal떡: chapalgaru(chapal: 국내산), 팔앙금(중국산)

| 두 가지 원료의 합이 98%미만인 경우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

시루떡: 국산 쌀 70%, 중국산 팥 20%, 중국산 동부 5%, 소금 등 혼합 제조한 경우
→ 시루떡: 쌀(국산), 팥(중국산), 동부(중국산)
모시송편: 국산 맵쌀 50%, 국산 모싯잎 30%, 중국산 동부 고물 16% 등 제조시
→ 맵쌀(국산) 50%, 모싯잎(국산) 30%, 고물(동부: 중국) 16%

| 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

무시루떡: 국산 맵쌀 80%, 중국산 팥 15%, 국산 무3%, 국산 소금 2% 혼합 제조한 경우
→ 무시루떡: 쌀(국산), 무(국산), 팥(중국산), 소금(국산)
고추장: 국산 chapal 50%, 호주산 밀가루 30%, 중국산 혼합양념 15%, 중국산 고춧가루 5%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 고추장: chapal(국산), 밀가루(호주산), 혼합양념(중국산), 고춧가루(중국산)

3. 국내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은?

- 국내에서 가공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표시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 표시 가능

예시

곽가네 양념장원료 구성

1순위 복합원재료	된장 40%	원료 구성성분	호주산 콩 60%, 미국산밀가루 40%
	원산지표시대상	호주산 콩, 미국산 밀가루	
2순위 복합원재료	고추장 30%	원료 구성성분	국산chapal 40%, 중국산 고추 40%, 미국산 밀가루 20%
	원산지 표시대상	국산chapal, 중국산 고추	
3순위 원료	콩 15%	원료 구성성분	국산콩 100%
	원산지 표시대상	국산콩	
3순위 외 원료	양파 5%, 마늘 5%, 고추 5%	원료 구성성분	국산 양파 100%, 중국산 마늘100%, 중국산 고추100%
	원산지 표시대상	해당없음	

→ 원산지 표시: 곽가네 양념장

[된장(콩: 호주산, 밀가루: 미국산), 고추장(chapal: 국산, 고추: 중국산), 콩(국산)]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1가지 원료표시



4.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할 경우

·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각각 표시

예시

맛나 야채죽

1순위 원료

쌀 80%

원료 구성성분

국산 40%, 중국산 40%, 미국산 20%

원산지표시대상

국산 40%, 중국산 40%

2순위 원료

당근 10%

원료 구성성분

국산 당근 100%

원산지 표시대상

국산 당근

3순위 원료

대파 10%

원료 구성성분

국산 대파 100%

원산지 표시대상

국산 대파

→ 원산지 표시: 맛나 야채죽

[쌀(국산 40%, 중국산 40%), 당근(국산), 대파(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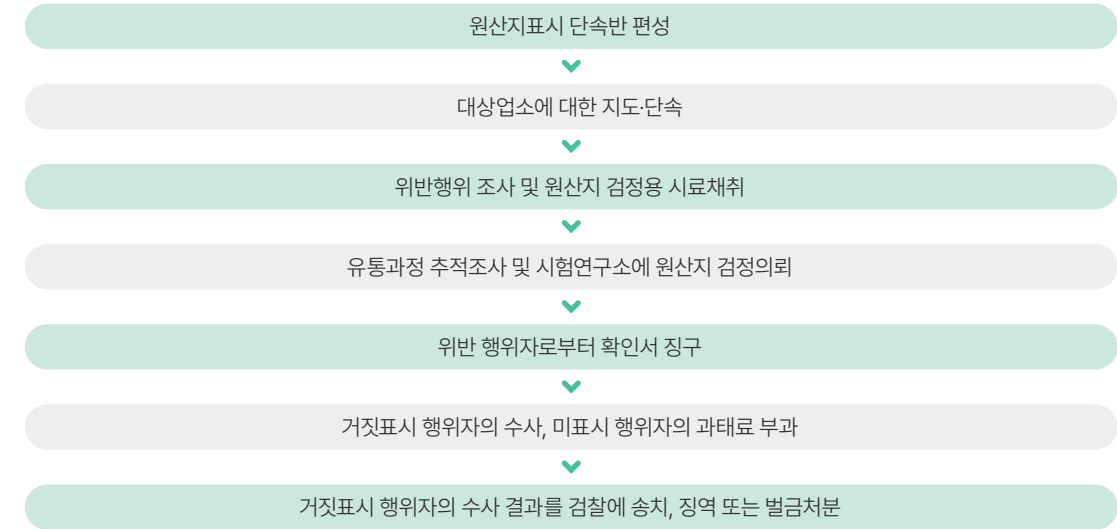
5. 국산으로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사용된 원료종 물, 주정, 당류, 당류가공품,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산일 경우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처리절차 및 벌칙

1)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2)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절차

공통내용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품 판매 등 거래 행위 금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

· 위반내역 공표

· 원산지 위반자 의무 교육 이수 명령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처벌 절차

현장적발 (확인서)

과태료 부과

농산물 (5~1,000만원)
농산물 가공품 (20~1,000만원)
음식점 (30~500만원)

거짓표시 처벌 절차

현장적발 (확인서)

형사입건 (신문조사)

검찰송치 (법원판결)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2년간 2회 이상 위반자 위반금액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5년 이내 재범자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단속반은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현장에서 휴대용단말기(스마트폰)로 위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사건에 대한 외압, 청탁 등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3) 처분 및 벌칙

- 원산지표시 위반자 공표
- 원산지 표시위반자의 의무교육
 - *근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 *교육대상: 거짓 표시위반자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

과태료

미표시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방법 위반

· 원산지 표시하였으나 글자크기가 기준보다 작은 경우

· 원산지 표시하였으나 표시위치가 부적정한 경우

징역·벌금

거짓표시

· 외국산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다르게 표시 하는 경우

· 원산지를 혼동 표시 하는 경우

· 원산지를 위장 판매하는 경우

· 원산지 표시한 부분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참조: 위반사례

1)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 거짓표시



가공품 업체 내부에 부착된
'국산콩' 원산지 홍보 현수막



가공품 업체에 저장되어 있는
두부의 원료가 되는 콩
원산지 수입콩으로 표기
(포장재 뒷면에 국가명 표시되어 있음)



가공품 업체 내부에 저장된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 원산지 단속 및 위반사범 처리 절차

1. 접수: 부정유통신고 담당

인터넷 신고건은 본원 원산지관리과에서 매일 2회(9시, 13시) 이상 검색하여 해당 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

2.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

업주 입회하에 현물 확인과 장부 등을 조사하고 현물 사진촬영,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 증거확보 후 확인서 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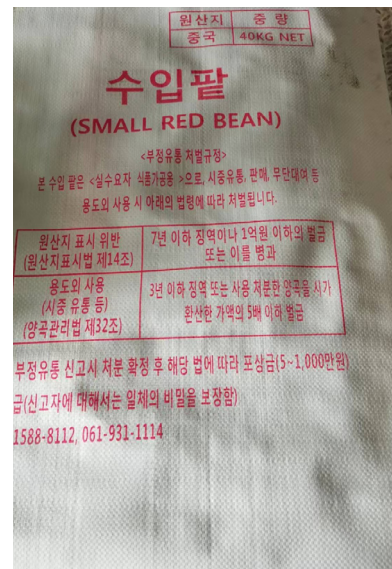
3. 거짓표시

행위자는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수사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는 과태료부과 조치

4.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알려주고,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종결되면 기준에 따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5. 특별사법경찰 단속원 현황: 지명인원: 1,110명



◆참고자료: 수확기 가공용쌀 사후관리 안내

수확기 가공용쌀 사후관리 안내

정부·지자체·농관원에서는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발표와 함께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쌀가공식품 제조업체 대상으로 9월 30일 ~ 11월 29일 기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①원료 쌀 생산연도 표시 위반여부, ②가공용쌀 용도의 사용여부, ③원산지 허위표시, ④원산지 미표시, ⑤수불대장 미입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용쌀 국산쌀 부족에 따라 협회에서 확보 공급한 농협쌀 공동구매백미(2023년산)는 반드시 '가공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2024년산이 햅쌀로 표기되고 있음에 따라 '햅쌀'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유의사항>

1. 수불내역 관리

- ▶ 가공용쌀은 「가공용 쌀 공급관리시스템」(www.krfa.or.kr)에 가공용 쌀 수불대장, 제품 생산 대장 및 판매대장 작성·관리(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14조 제1항)
 - 즉석판매제조업체 지회·지부는 구매내역 및 개별업소 공급내역 작성·관리
 - 가공용 쌀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미비치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1회 위반 1개월, 2회 위반 3개월, 3회 위반 6개월 가공용쌀 공급중지
 - * 「가공용쌀공급관리시스템」 수불대장 미입력 시 가공용 쌀 추가배정 및 배정변경 불가

2. 원산지관리

- ▶ 정부양곡 수입쌀만 사용하는 경우 "외국산"으로 원산지 표시
 -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요령 제4조에 제2항에 따라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 쌀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산"으로 표시
- ▶ 정부양곡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 표시
 - 예시 : 쌀(외국산 60%, 국내산 40%)

3. 사용관리

- ▶ 정부양곡 가공용쌀은 지정된 제품생산 용도로만 사용
- ▶ 시장·군수 사전승인 없이 공장 이외의 장소로 무단 이동해서는 안됨
- ▶ 현 포장재를 판매제품 포장용으로 재사용 금지(원산지 오인 소지)

4. 처벌사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유통 시 처벌사항
 - 원산지 거짓 및 미표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거짓 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미표시)
 - 가공용 쌀 공급중지 : 1회 위반 3개월, 2회 위반 6개월, 3회 위반 1년
- 「양곡관리법」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 사용 및 처분 시 처벌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가공용 쌀 공급중지 : 1회 위반 1년

떡류 가공품 원산지 표시 (샘플)

제품명	중량(g)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일 (소비기한)
호박깨송편	200	멥쌀(국산)65%, 참깨(인도산)15%, 단호박분말(중국)10%, 설탕 9%, 소금(국산)1%	제조일로부터 24시간
팔찰시루떡	200	찰쌀(국산)50%, 팥(중국산)30%, 호박고지(중국산)10%, 설탕 9%,소금(국산)1%	제조일로부터 24시간
콩인절미	200	찰쌀(국산)75%, 볶은콩가루(미국산)15%, 백설탕 9%, 소금(국산)1%	제조일로부터 24시간
		SAMPLE (예시)	

표시 관련 사항

1. 식품유형 : 떡류
2. 업소명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방앗간
3. 소재지 : 서울 강북구 도봉로 41길 7-3 4층
4.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① 구입한 제품에는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원료(호두, 땅콩, 대두, 잣, 밀, 우유)를 사용한 제품과 또는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② 제품출고 당시 이물질에 오염, 하자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은 가능합니다.

③ 구매하신 떡은 꼭꼭 씹어서 섭취 바랍니다.

④ 구입하신 떡을 섭취하신 후 남은 떡은 냉동 보관 후 이용바랍니다.(오염방지)
5. 보관방법 : 실온

※참고1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小分), 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2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위의 내용은 표시 방법 샘플이며, 해당 업소 제품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 후 이용

참고자료

1. 식품위생법: 식약처 → 법령 자료 → 식품위생법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식약처 → 법령 자료 → 표시
3. 소비기한: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 기타 참조: 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관리>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방법

※ 아래 원산지표시방법에 의거 표시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 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부정유통신고 1588-8112

1. 국산인 경우 “국산”, “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로 표기 가능

- 외국산일 경우: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 표시. **예시** 콩(미국산)
2. 1순위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1순위 원료 원산지만 표시

- **예시** 가래떡: 국내산 쌀: 99%, 소금 1% → 가래떡 : 쌀(국내산)
3. 1순위, 2순위 원료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1,2 순위 원료 원산지만 표시

- **예시** 콩설기: 국내산 쌀75%, 중국산 콩 24%, 식염1% 혼합 후 제조시 → 콩설기: 쌀 (국내산), 콩 (중국산)
4. 그 외의 경우 – 1,2,3 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 **예시** 약식: 국내산 찰쌀 70%, 국내산 밤 10%, 중국산대추 5%, 국산 잣 3%, 식용유1%
→ 약식: 찰쌀(국내산), 밤(국내산), 대추(중국산)
5.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8번 참조) 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

- **예시** 무시루떡: 국내산 쌀 80%, 중국산 팥 15%, 국산 무 3%, 국산 소금 2%
→ 무시루떡: 쌀(국내산), 팥(중국산), 무(국산), 소금(국산)
6.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표시(구입한 팔앙금 원재료 2개 기재)

1) 수입한 팥, 콩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만든 앙금류를 섞어서 만든 적팔앙금인 경우

- 적팔앙금: 팔앙금(팥: 중국산)40%,강낭콩앙금(강낭콩: 캐나다)30%, 설탕, 변성전분, 정제염
→ 팔앙금(팥: 중국산), 강낭콩앙금(강낭콩: 캐나다)

2) 수입한 앙금류를 혼합하여 제조한 적팔앙금인 경우

- 적팔앙금: 팔앙금(중국산)40%, 강낭콩앙금(캐나다)30%, 설탕, 변성전분, 정제염 → 팔앙금(중국산), 강낭콩앙금(캐나다)

3) 팔앙금을 직수입한 경우

- 팔앙금: 중국산(팥, 설탕, 변성전분, 정제염) → 팔앙금(중국산)
7. 표시기준에서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
8. 상기표에는 실제 제조하는 품목의 원료 및 부재료에 따라 배합 높은 순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영업자에게 귀책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및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전국어디서나) 1588-8112

❖ 처벌기준

구분	미표시	거짓표시(혼동표시, 위장판매)
처벌	5, 20~1,0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산물, 가공품, 통신판매)	7년이하징역이나1억원 이하 벌금 1년이상10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벌금 (5년내재 적발자)
시정명령	표시 이행 · 변경 · 삭제,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교육	2년내2회 이상 위반 - 집합 2시간, 온라인 3시간	위반
공표	2년내2회 이상 위반 - 12개월	위반
과징금	해당없음	2년내 2회 이상 위반 - 최대 3억원